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9일 11시 41분



목차

목차	2
의회발언/시입장	3

등록일자 : 2020.11.12 조회수 611 등록자 : 김지아 담당부서 : 허가민원과

 의회발언

[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이상우의원 10분 발언 해명자료]

✦ 발언일시 : 2020. 11. 10.(수) 14:00 / 1차 본회의

✦ 주요내용 / 소미산 산림훼손 문제점 관련

① 소매점 신청부지 현장 미확인 관련

 시입장

① “소매점 허가신청 전 사전공사 등 현장 미확인”에 대하여

○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는「건축법」제27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및 「여수시 건축조례」 제 22조에 따라 건축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 대행토록 되어 있어 건축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음.

○ 건축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으로 접수되기에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등은 개별법에 따라 각각 현장 조사를 하고 있음.

② 향후계획

○ 불법행위 원상복구 이전 건축허가 재신청할 경우 불허가 및 반려 처리

목록

이전글

[제205호 임시회 주종섭 시의원 10분 발언(202...

다음글

[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이상우의원 10분 발...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